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9. 13.
사회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 2006년 8월 28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06년 9월 1일
- 라. 상정일자 : 제123회(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2006년 9월 8일)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가. 제안이유

2006. 2.5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3.12.5 시행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전부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안 제3조)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

○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30일전까지 후임자를 선임토록 함.

○ 센터의 사업을 규정(안 제8조)

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 위주로 규정하여 그 기능을 구분함

○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 위탁 시 협약을 체결토록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도록 함.

-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안 제14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17조)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 남 식)

- 2006.2.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제3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 등으로 확대한 내용이며,
- 안제6조 내지 제11조에는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되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30일전에 선임하고,
 -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자원봉사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안제14조에는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 안제17조에는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정하는 등 동 조례 대부분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
----------	---

제출년월일 : 2006. 8. 2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2006. 2.5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3.12.5 시행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전부개정하고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안 제3조)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

나.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30일전까지 후임자를 선임토록 한다.

다. 센터의 사업을 규정(안 제8조)

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 위주로 규정하여 그 기능을 구분함

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 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

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
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도록 함.

마.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안 제14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
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
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바.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17조)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
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
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함

3. 참고사항

- 관계근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같은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의사항 : 필요없음
- 입법예고 : 2006. 6.27 ~ 7.18(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사무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30일전까지 후임자를 선임토록 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구 지역의 자원 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⑧ 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나.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p>다.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 활동</p> <p>라.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p> <p>마.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p> <p>바.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p> <p>사.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p> <p>아.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 활동</p> <p>자.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p> <p>차.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p> <p>카.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p>	
<p>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의 규 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 한다.</p>	<p>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p>
<p>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 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각각의 하부조 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p>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p>	<p>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p>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과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p>제3조(구청장의 책무)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p>	<p>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p> <p>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p> <p>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p> <p>①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	--

<p>제2장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p> <p>제4조(설치 및 기능) 지역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또는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의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 수요자의 자원봉사활동 	<p>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p> <p>③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장 자원봉사센터</p> <p>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p>
---	--

요청시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의료분야 등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조직 및 구성) ①센터에는 사무소를 둔다

②센터에는 팀장 또는 소장 1인 및 운영요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7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30일전까지 후임자를 선임토록 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p>제6조(센터의 운영 등) ①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p> <p>④기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 지원방안 등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p>	<p>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p> <p>6. 그 밖에 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p> <p>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p> <p>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센터는 소장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p>
---	--

칙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등록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

제10조(센터의 지원) ①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우

4.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제8조(자문회의 운영) ①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 자원봉사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의 대행) ①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단체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시민운동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키는 경우, 대행기관의 선정 및 기타 대행에 관한 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

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가입) ①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p>2.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p> <p>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③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제18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자원봉사자 우대 등) ①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한 자에 대하여 구 주관 각종 강좌 또는 문화행사 등에 수강료를 감면하거나 초청 등 우대할 수 있다.</p> <p>②구청장은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한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해 자원봉사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p>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